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27

2021. 11. 29.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4. 강남구청장(일자리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1. 11. 29.)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장원석)

가. 제안이유

○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일자리 창출이 구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강남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 창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청년(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으로 한정하여 39세 이상의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지원 및 창업지원센터 입주 근거가 없음.

○ 이에 따라 중장년 등을 포함하는 창업 지원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창업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및 별표)

○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입주 대상을 나이 제한 없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로 규정

- 공개모집 방법을 구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구체화

- 창업자의 역량 강화 및 보육, 투자 지원 및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업자 육성 전문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의 입주 근거 마련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법」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21. 10. 8. ~ 2021. 10. 28.)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특기할 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1]에서는 창업과 관련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고 같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

은 법 제6조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과는 별도로 강남구 자체사업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창업지원센터는 강남구 창업지원시설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삼로, 테헤란로 일대 유관기관과 연계하며, 국내외 우수 VC(벤처캐피탈), AC(엑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 전문육성기관을 유치하여 구립 창업지원시설 입주 스타트업과의 수시 투자상담 및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보임.

- 강남 테헤란로는 성공한 스타트업 회사, 정부와 대기업의 인큐베이팅 센터, 공유오피스 등 스타트업 기업 관련 기관이 다수 분포하며, 투자사·운영사·관련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하여 투자 및 기업 홍보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강남의 테헤란로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존재하며, 우리 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강남 스타트업 밸리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에 창업가거리를 중심으로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 및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여짐.

- 서울시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창업지원센터 관련 자치구 조례 현황〉

No	자치구	창업지원센터 관련 조례 명칭	연령 제한
1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없음
2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벤처기업육성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없음
3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음
4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없음
5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음
6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음
7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음
8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없음
9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음
10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음
11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음
12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39세

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본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은

- 안 제1조(목적)의 규정은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조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바 <예시>[2]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만, 제3조를 신설하여 <사례>[3]와 같이 (적용 범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2조(정의) 정의규정에서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정의한 용어가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고 있는 바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예시>[4]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

- 안 제4조(기능) 제1호 중 '그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 안 제5조(운영 등)제1항의 규정은 구청 직영을 고려한 규정으로 보이나 직영은 파견이 아니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지 않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수탁기관[5]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이는 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는 행정재산을 사용함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6]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7] 및 같은

---

2) **<예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사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시>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남구 주민 또는 강남구에 사업장을 두는 창업자등에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4) **<예시>**

2. "창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참고)** 다른 자치단체, 공단, 재단은 민간위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제4항[8]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판단됨.

---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이하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13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30호

제안일자 : 2021.11.29.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정의규정에 인용되지 않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용어를 수정하고, 창업지원에 대한 적용 범위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일부 논리에 맞지 않은 자구를 정리 하려는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조례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안 제1조)

○ 본문에 인용되지 않은 ‘창업자’ 등 관련 규정 수정(안 제2조)

○ 창업지원에 대한 지원 범위 조항 신설(안 제3조)

○ 수탁기관에 공무원 파견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제1항)(종전의 안 제5조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를 “강남구가”로 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2. “창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남구 구민 또는 강남구에 사업장을

두는 창업자등에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호 중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발굴·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한다.

안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안 제8조(종전의 제7조) 제1항제1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남구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원안과 같음)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창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삭 제>
4.·5. (생 략)	3.·4. (원안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남구 구민 또는 강남구에 사업장을 두는 창업자등에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 (원안 제3조와 같음)
제4조(기능)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기능) ----------.
1. 창업자등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1. -------- 발굴·육성 및 지원 사업
2. ~ 5. (생 략)	2. ~ 5. (원안과 같음)
제5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등) <삭 제>
② (생 략)	① (원안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
④ (생 략)	③ (원안 제4항과 같음)
제6조 (생 략)	제7조 (원안 제6조와 같음)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
1.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 제7조----------
2. ~ 4. (생 략)	2. ~ 4. (원안과 같음)

②(생 략) 제8조 ~ 제11조(생 략)	②(원안과 같음) 제9조 ~ 제12조(원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530

제출연월일 : 2021. 11. 4.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일자리정책과

1. 제안이유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일자리 창출이 구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강남구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 창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청년(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으로 한정하여 39세 이상의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지원 및 창업지원센터 입주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중장년 등을 포함하는 창업 지원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창업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및 별표)

다.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입주 대상을 나이 제한 없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로 규정
- 공개모집 방법을 구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구체화
- 창업자의 역량 강화 및 보육, 투자 지원 및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업자 육성 전문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의 입주 근거 마련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0. 8. ~ 2021. 10. 28.)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5) 입안심사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4. “창업지원센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이하 “창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입주자”란 창업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창업지원센터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등을 말한다.

제3조(창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창업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기능)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자등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2. 창업 공간 및 기술개발 지원

3. 창업자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홍보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규정 등) 수탁기관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① 창업지원센터의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등으로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남구로 이전하는 창업자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자등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구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업자등의 역량 강화 및 보육, 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자등 육성 전문기관을 입주하게 하거나 취업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제3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기 능
1	창업지원센터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강남구 역삼로 160	창업 지원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관리·운영 위탁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사용료 수입은 입주기업 5만원/명(200명 가정), 강당·세미나실 대관료는 유사시설 평균 사용료 반영, 대관률 35%로 가정, 주차장 사용료는 區공영주차장 노상2급지 기준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관리·운영 위탁비는 연도별 증가율 5%로 가정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합계
세입	○ 사용료	143,865	172,638	172,638	172,638	172,638	834,417
	소계(a)	143,865	172,638	172,638	172,638	172,638	834,417
세출	○ 관리·운영 위탁비	1,168,727	1,429,208	1,500,668	1,575,701	1,654,486	7,328,790
	소계(b)	1,168,727	1,429,208	1,500,668	1,575,701	1,654,486	7,328,790
□ 총 비용(a-b)		1,024,862	1,256,570	1,328,030	1,403,063	1,481,848	6,494,37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합계
구비	지방세수입	1,024,862	1,256,570	1,328,030	1,403,063	1,481,848	6,494,373
	세외수입	143,865	172,638	172,638	172,638	172,638	834,417
합계		1,168,727	1,429,208	1,500,668	1,575,701	1,654,486	7,328,790

5. 덧붙이는 의견 : 사용료는 전액 세외수입으로 반영,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구축 후 기존 청년창업지원센터(3개소 운영비 2021년 기준 총 12.8억원) 통합운영에 따라 재정부담은 오히려 완화예상(연간 약 2억원 이상 예산절감)

6.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행정6급 이정완(02-3423-556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합계
입주기업 사용료	90,000	108,000	108,000	108,000	108,000	522,000
대관료(강당, 세미나실)	17,865	21,438	21,438	21,438	21,438	103,617
주차장 사용료	36,000	43,200	43,200	43,200	43,200	208,800
합계	143,865	172,638	172,638	172,638	172,638	834,417

2. 세출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위탁운영비	인건비	161,777	185,308	194,574	204,302	214,517	960,479
	프로그램운영비	686,790	840,498	882,523	926,649	972,981	4,309,440
	시설관리용역	320,160	403,402	423,572	444,750	466,988	2,058,871
합계		1,168,727	1,429,208	1,500,668	1,575,701	1,654,486	7,328,790